2023 객관식세법(이승원ㆍ이승철 저. 나무경영아카데미) 추록 및 정오표 - 4. 6. 현재

2023년 3월 30일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과 세법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현재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사항 및 교재출간 후 발견된 수정사항 중 주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.

표현방식의 단순한 변화 등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수험목적을 고려하여 생략하였습니다.

I.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

1. 개정사항 개요

(1) 법인세법

통합투자세액공제율 일부 상향 조정

(2) 소득세법

① 고위험·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

| 현 행 | 개 정 |
|-----------------|--|
| | □ 고위험·고수익채권 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|
| | ㅇ (적용요건)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|
| <신 설> | ○ (특례내용)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은 14% 세율로 분리과세 |
| - 시 선 결기 | (가입 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) |
| | ㅇ (적용한도)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|
| | ㅇ (적용기한) '24.12.31. 까지 가입분 |

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확대 2023년에 한정하여 대중교통사용분공제율을 40%에서 80%로 확대함

2. 교재 수정사항

| Page | 행 | 수 정 전 | 수 정 후 |
|-------|--|--|---|
| 1-290 | | ※ 통합투자세액공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 | |
| | | 통합투자세액공제액 : A+B | |
| | | A. 기본공제: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×1%(중견기 | |
| | 하15 | 단, 2023년에 한정하여 일반기업 3%, 중견기업 7%, | |
| | | B. 추가공제 : (당기 투자액 —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)× 단, 2023년에 한정하여 10% 적용 제정 | 3% 2 |
| | | | |
| | | | 중소기업 12%, 단, 2023년에 한정하여 일반기업 6%, 중견기업 10%, |
| | | 중소기업 18% 식용계용기의 세력증세달을 식용하고, 국가신약/ 액공제율을 적용한다. | 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5%(중소기업 25%)개정 의 세 |
| | | |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며,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|
| |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는 추가공제율을 4%(단, 2023년에 한정하여 10% 제정 | | 는 추가공제율을 4%(단, 2023년에 한정하여 10% <mark>개정</mark>)로 한다. |
| 2-25 | 상21 | (추 가) | (11)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(3,000만원까지의 매입액) |
| | | (+)() | 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개정 |
| 2-26 | ō⊦4 | | ⑪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개정 |
| | | (추가) | ②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계정 |
| 2-176 | 상14 | 아래 별도 기술 | |
| 2-186 | 하1 | ④₩5 ,250,000 | ⊕₩6,000,000 |
| 2-192 | | (2) 신용카드소득공제액: ~ =₩5,250,000 | (2) 신용카드소득공제액: ~ =₩6,000,000 |
| | | ① 공제대상액:~=₩5,250,000 | ① 공제대상액:~=₩6,450,000 |
| | | $a.(\Psi6,000,000+\Psi3,000,000)\times40\%+ \sim = \Psi3,900,000$ | a. $\forall 6,000,000 \times 40\% + \forall 3,000,000 \times 80\% + \sim = \forall 5,100,000$ |
| | 하2 | $\neg.(\del{4}\%6,000,000+\del{4}\%3,000,000)\times40\%+\sim=\del{4}\%3,900,000$ | $\neg . \forall 6,000,000 \times 40\% + \forall 3,000,000 \times 80\% + \sim = \forall 5,100,000$ |

※ 2-176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산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

소득공제=Min[1, 2]

- 1. 공제대상액: ① 또는 ② 또는 ③ 또는 ④
 - ① 신용카드사용분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: a+b+c
 - a. 전통시장사용분*1×40%+대중교통이용분*2×40%(2023년에 한하여 80%)개정
 - b. (도서등사용분*3+직불카드등사용분*4,*6)×30%
 - c. (신용카드사용분*5-총급여×25%)×15%
 - ② 신용카드사용분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적고 신용카드사용분,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도서 등사용분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:a+b
 - a. 전통시장사용분×40%+대중교통이용분×40%(2023년에 한하여 80%) 계정
 - b. (도서등사용분+직불카드등사용분+신용카드사용분-총급여×25%)×30%
 - ③ <u>신용카드사용분</u>,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도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이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적고 신용카드사용분, 직불카드등사용분, 도서등사용분 및 전통시장사용분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: a+b
 - a. <u>대중교통이용분×40%(2023년에 한하여 80%)</u>제정
 - b. (전통시장사용분+도서등사용분+직불카드등사용분+신용카드사용분 총급여 ×25%)×40%
 - ④ <u>신용카드사용분</u>, 직불카드등사용분, 도서등사용분 및 전통시장사용분을 합친 금액이 총급 여액의 25%보다 적은 경우
 - : (대중교통이용분+전통시장사용분+도서등사용분+직불카드등사용분+신용카드사용분-총급여×25%)× 40%(2023년에 한하여 80%) 제정
- 2. 한도: (1)+(2)개정
 - (1) 일반한도: 250만원(총급여액이 7,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)
 - (2) 추가한도: Min[1], (2)
 - ① 전통시장사용분×40%+<u>대중교통이용분×40%(2023년에 한하여 80%)</u>계정 +도서등사용분×30%
 - ② 200만원(총급여액이 7,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)
 - * 일반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.

Ⅱ. 시행령 확정에 따른 문구 변경사항

| Page | 행 | 수 정 전 | 수 정 후 |
|-------|------|---|--|
| 1-65 | ōŀ6 | ① 세금과 공과금(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직접외국 납부세액 포함) | ① 세금과 공과금(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 포함) |
| 3–143 | 상21 | | i.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판매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정 |
| 4-9 | ōŀ12 | *1.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형제자매 및 태아(연로자공제 및 장애인공제는 제외) 개정 를 말한다. 이 경우 직계존비속 및 형재자매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. | *1.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형제자매를 말한다. |
| 5–6 | 상16 | (4) 본인이 ~ 생부나 생모 | (4) 본인이 ~ 생부나 생모(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) |
| 5-12 | 하5 | *처음 방문한 ~ 3일(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) 이상이어야 한다. | *처음 방문한 ~ 3일(공휴일 및 대체공휴일,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) 이상이어야 한다. |
| 5-75 | ōl3 | ~ 다만, 전세권 등 설정일 중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 합계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. | ~ 다만, 직전 보유자 보유기간 중의 전세권 등 설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 합계액의 범위(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전세권등이 있는 경우에는 0원)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. |

| | | | a. 해당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|
|------|--|---|--|
| | | | b. ~ c. 생략 |
| 7–11 | | a. 해당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및 확인서 개정 를 과세당국 | d. 내국법인이 해당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반환이 확인되지 않 |
| | | 에 제출하는 경우 | 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분하거나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개정 |
| | | b.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(사실상 폐업한 경우 포함) | * 임시유보 처분을 배제하고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사 |
| | | c.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·경정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| 실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·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 |
| | | 만료되는 경우 |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배당은 내국법인이 처분을 한 |
| | | | 경우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날개정에, 과세당국이 처분을 한 경 |
| | | | 우는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. |

Ⅲ. 교재 수정사항(3월 14일에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 사항 포함)

| Page | 행 | 수 정 전 | 수 정 후 |
|-------|-------|--|--|
| 1-54 | 상13 | ~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~ | ~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~ |
| 1-308 | 상4 | ~ 제21기 과세표준은 ₩260,000,000 ~ | ~ 제21기 과세표준은 ₩200,000,000 ~ |
| | 상12 | ⑤ ₩21,554,000 | ⑤ ₩16,154,000 |
| 1–318 | 상5 | ※ 문제 27 해답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 (1) 감면후세액 ① 산출세액: ₩200,000,000×9%─₩18,000,000 ② 감면후세액: ₩18,000,000 - ₩1,400,000─₩16,600,000 (2) 최저한세: (₩200,000,000 + ₩20,000,000)×7%─₩15,400,000(초 (3) 외국납부세액공제액: Min[①, ②]─₩306,000 ① ₩400,000 ② ₩18,000,000×₩3,400,000/₩200,000,000─₩306,000 (4) 차감납부할 세액: ₩16,600,000 - ₩306,000 - ₩1,000,000×14% | |
| 2-40 | ōl2 | ③ ₩2,826,000 | ③ ₩6,326,000 |
| 2-47 | ōŀ3 | ② 익금불산입: ₩7,000,000×30%— (2,100,000) ₩4,900,000 | ② 익금불산입:₩7,000,000×80%= (5,600,000) ₩1,400,000 |
| | | (4) 차액:₩7,726,000-₩4,900,000=₩2,826,000 | (4) 차액: ₩7,726,000 — ₩1,400,000 — ₩6,326,000 |
| 2-138 | 상5 | *1. 월정액 급여 : ~ +₩125,000=₩825,000 | *1. 월정액 급여 : ~ +₩225,000=₩925,000 |
| 2-222 | 상2 | ~ 옳은 것은? | ~ 옳은 것은? 단, 세액공제액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한도는 고 려하지 않는다. |
| 7–12 | 상1 | ②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득처분을 한 경우에 납세자가 이전소득금액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 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전소득금액통지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. | |
| 7–12 | ōे⊦14 | *~ 제출기한이 만료된 날(4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득처분을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일)부터 15일 이내에 ~ | |
| 7-84 | 상12 | ①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별장, 골프장, 고급주택 ~ | ①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골프장, 고급주택 ~ |
| 7–86 | 하14 | 2.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~ 현재는 60%이다. | 2.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~ 현재는 60%이다. 단, 1세대 1주택의 적용비율은 30%~70%이며 현재는 45%이다. 개정 |
| 7-86 | | 0.1%(6천만원 이하)~0.4%(3억원 초과), 4%(별장) | 0.1%(6천만원 이하)~0.4%(3억원 초과)개정 |
| 7-86 | ਰੋ⊦ਿ6 | *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~ | *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~ |